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32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이미경, 박선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8. 29. 접수 제408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8. 30. 접수 제115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1. 26. 19:00경 경남 하동군 D마을회관 주방에서 원고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을 한 잔씩 권하면서 왜 우리 신랑에겐 술을 주지 않고 사람 차별하느냐”라며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그로 인해 벽면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C은 위 사건으로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9. 8. 14.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315호)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2020. 5.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9노1786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9. 8. 27.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순번을 붙여 지칭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B은 2019. 8. 29.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B은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9. 1. 26. C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바,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C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법원의 채무초과 사실에 대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C의 무자력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